제2차산업경제위원회 2015.7.3(금) 10:00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: 박우양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6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5일

3. 제안 이유

○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3조)
- 나. 체험마을등의 지원 및 지원내용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다. 체험마을 사업 활성화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(안 제8조)
- 라. 시장·군수가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규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'은 도시와 농촌 간 교 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 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